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75차 임시총회 자료집

| 일정 | 2021. 5. 27.(목) 10:00~17:00[1일간]

| 방법 | 사전 제안설명서 공지 후, 총회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 총회(투표)장소 | 노동조합 회의실

목차: 서면회의

- 회순 보고 ····· 3
- 노동조합 연혁 ····· 4
- 성원 보고 ····· 8
- [1호 안건]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9
- 역대 노동조합 위원장 ····· 20
- 제17대 노동조합 임원 및 집행부 소개 ····· 21

75차 임시총회 회순

- 재적 조합원 보고: 195명
- 성원 보고: 추후 결과 보고 시 공지

- 안건 심의

  ▣ 1호 안건: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결과 보고: 의결 후 보고

노동조합 연혁

年	月(日)	內容
2021.	2. 13.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일
2021.	2. 11.	2020학년도 단체(임금)협약 체결: 방학중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제 실시
2021.	2. 8.	제74차 임시총회(서면회의)
2020.	12. 21.	2020학년도-3차 노사협의회: 방학중 단축근무 실시 합의(시행)
2020.	8. 28.	제33차 정기총회(서면회의)
2020.	7. 9.	2020학년도-1차 노사협의회: 방학중 단축근무 실시 합의(시행)
2020.	2. 13.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일
2020.	2. 11.	2019학년도 단체(임금)협약 체결: 추가성과급 지급 및 가족수당 인상
2020.	2. 6.	제73차 임시총회
2019.	11. 9.	조합원 단합 트레킹 대회(경주 무장산)
2019.	8. 27.	제17대 출범식 및 제32차 정기총회
2019.	6. 21.	제17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철환), 부위원장(이승희), 사무국장(정광국)
2018.	10. 30.	단체협약 체결
2018.	8. 28.	제31차 정기총회
2018.	5. 10.	12대 총장후보 선거(참여비율 1차: 18%, 2차: 10%)
2017.	10. 11.	단체협약 체결
2017.	8. 22.	제30차 정기총회
2017.	6. 20.	제16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6.	8. 23.	제29차 정기총회
2016.	6. 20.	단체협약 체결
2015.	11. 24.	단체협약 체결
2015.	8. 27.	제28차 정기총회
2015.	7. 14.	직원 특별채용(직종전환) 평가 실시
2015.	7. 8.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실시
2015.	6. 23.	제15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4.	8. 28.	제27차 정기총회
2014.	7. 25.	목적적립금 연구위원회 신설 및 운영
2014.	3.~7.	학원 정상화를 위한 각종 활동 전개(컨테이너 농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상경집회 참가, 이사회 노동조합 의견 전달 등)
2014.	2. 27.	단체협약 체결
2014.	2. 26.	임시총회(2014학년도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심의 및 의결)
2014.	1. 14.	제14대 임원 재선출(보궐선거):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3.	6. 27.	임금협약 체결
2013.	5. 9.	제14대 임원선출:위원장(최문덕), 부위원장(김상곤), 사무국장(이덕수)
2012.	10. 13.	2012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본교 대운동장)
2012.	8. 8.	제25차 정기총회

年	月(日)	內容
2012.	4. 10.	단체협약 체결
2011.	8. 24.	제24차 정기총회
2011.	7. 28.	단체협약 체결
2011.	6. 3.	제13대 임원선출: 위원장(양춘호), 부위원장(김중호), 사무국장 (김지홍)
2011.	3.~6.	학원정상화를 위한 천막 농성 및 피켓시위 실시
2010.	9. 14.	제23차 정기총회
2010.	7. 20.	특별채용(일반직군 전환) 시험 실시
2010.	3. 23.	2010학년도 임단협 무교섭 타결(안) 의결, 임단협 체결(7. 27.)
2010.	1. 16.	정이사 후보 7명 선출
2009.	11. 11.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구성(역대 위원장)
2009.	7. 14.	제12대 임원선출: 위원장(양춘호), 부위원장(윤미숙), 사무국장(김중호)
2009.	7. 7.	단체협약 체결
2009.	5. 19.	노동조합 창립 제21주년 기념 바자회 '행복충전소' 개최
2008.	11. 1.	2008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장소-구미)
2008.	5. 23.	단체협약 체결
2008.	2. 13.	노동조합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2007.	11. 17.	2007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장소-경주)
2007.	9. 14.	제11대 출범식 및 제20차 정기총회
2007.	8. 2.	제11대 임원선출: 위원장(이기동), 부위원장(전재경), 사무국장(이덕수)
2007.	5. 10.	투쟁백서(총장퇴진운동) 발간 배포
2007.	4. 5.	단체협약 체결
2006.	12. 28.	임시총회(안건: 2007학년도 임단협(안)의결 및 대강당건립기금조성 건)
2006	5. 12.	단체협약 체결
2005.	12. 19.	단체협약 체결
2005.	10. 4.	제9대 총장선거(직원 첫 참여)
2005.	9. 23.	제10대 출범식 및 제18차 정기총회
2005.	8. 31.	교협과 총장선거 직원참여 합의(1차: 13%, 2차: 7%)
2005.	6. 23.	제10대 임원선출: 위원장(김현수), 부위원장(김의규), 사무국(최원태)
2005.	3.~6.	총장퇴진운동 추진
2004.	10. 1.	노동조합 조합원 적립금(1인당 월2만원)적립
2004.	9. 21.	제17차 정기총회
2004.	7. 7.	단체협약 체결
2004.	2. 25.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2003.	9. 23.	제9대 출범식 및 제16차 정기총회
2003.	8. 13.	제9대 임원선출: 위원장(김현수), 부위원장(김의규), 사무국장(장영식)
2003.	5. 7.	단체협약 체결
2002.	9. 21.	제15차 정기총회
2002.	4. 22.	단체협약 체결
2001.	9. 20.	제8대 출범식 및 제14차 정기총회

年	月(日)	內容
2001.	8. 24.	제8대 임원선출: 사무국장(김석범)
2001.	8. 8.	제8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선우), 부위원장(오창룡)
2001.	3. 26.	단체협약 체결
2000.	9. 22.	제13차 정기총회
2000.	8. 4.	단체협약 체결
2000.	5. 27.	노동조합 창립 제12주년 기념 체육대회
1999.	9. 21.	제7대 출범식 및 12차 정기총회
1999.	7. 20.	제7대 임원선출:위원장(이선우), 부위원장(이재영), 사무국장(이종학)
1999.	5. 21.	단체협약 체결
1998.	3. 12.	단체협약 체결
1998.	2. 13.	노동조합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1997.	9. 24.	제6대 출범식 및 제10차 정기총회
1997.	6. 23.	제6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상목), 부위원장(박현구), 사무국장(최도영)
1997.	2. 13.	노동조합 창립 9주년 기념식
1996.	10. 18.	임원 보궐선거선출: 부위원장(강희복)
1996.	9. 24.	제9차 정기총회
1996.	6. 25.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5.	9. 28.	제5대 출범식 및 8차 정기총회
1995.	8. 16.	제5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승팔), 사무국장(김영근)
1995.	7. 13.	제5대 임원선출: 부위원장(박원형)
1995.	1. 20.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4.	9. 15.	제7차 정기총회
1994.	4. 22.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제17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4.	4. 16.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3.	9. 16.	제4대 출범식 및 제6차 정기총회
1993.	8. 18.	제4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박원형), 사무국장(금용주)
1993.	4. 7.	임금협약 체결
1992.	6. 30.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2.	4. 24.	제5차 정기총회
1992.	3. 20.	제3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영식), 부위원장(신성진), 사무국장(신효식)
1991.	7. 18.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1991.	5. 31.	제4차 정기총회
1991.	5. 11.	노동쟁의 발생신고
1990.	5. 4.	제3차 정기총회
1990.	3. 21.	단체협약 체결
1990.	2. 20.	제2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이성우,김상천,이영식), 사무국장(신성진)
1989.	4. 15.	제2차 정기총회
1989.	4. 7.	임금협약 체결
1988.	12. 12.	단체협약 체결

年	月(日)	內容
1988.	4. 9.	제1차 정기총회
1988.	2. 24.	대구시 남구청으로 신고필증 교부
1988.	2. 16.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맹
1988.	2. 13.	노동조합 결성대회 및 초대임원선출: 위원장(이승팔), 부위원장(안인구, 홍의융, 이화순), 사무국장(이성우, 배영배)

재적 조합원 보고

※ 2021년 5월 27일자 현재 기준

☐ 재적 조합원: 195명

☐ 휴직 조합원: 3명

▣ 출석 조합원:

※ 재적 조합원은 2021년 5월 27일자 조합비 납부자 기준이며, 성원 결과(출석 조합원)는 회의결과 공지 시에 보고합니다.

1호 안건 제안 설명: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노동조합 규약 개정(안) 신구조문(요약) 대비표 ☞ 전문 별첨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0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과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거구는 각 직능 및 직급별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정하되, 각 선거구별 조합원 10인당 1인으로 선출하며, 단수 6인 이상일 때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하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다.	⇒ 노조법 및 한국노총 규약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수 비례 선거구 설치 반영,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와 동일하게 조정. ※한국노총 표준안: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부서별/지역별) 선거구에서 조합원 ○○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제18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의장선출은 대의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이 호선한다. ② 총무는 의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제18조(임원 및 권리와 의무)** ①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좌 동> ③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서 발언 및 표결할 권리와 각종 선거권, 피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대의원은 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 참석 전에 이와 관련한 선거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의원회에서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대의원의 기본 역할(권리와 의무)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의 수임 사항 집행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심의 5. 상급 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예 결산에 대한 심의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단체협약 안 심의 11. 노사협의회 소속 단체 파견 대의원 선거인 및 교내 각종 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 심의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13.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기능)**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좌 동> 9. <좌 동> 10. <좌 동> 11. <좌 동> 12. <좌 동> 13. <좌 동>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삭 제> 3. <좌 동>	⇒ 임원에서 선출직이 아닌 사무국장 제외(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별도 선임)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회계감사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좌 동> 1. <좌 동> 2. 임원 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제34조(부서) 조합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4조(부서)** 조합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사무국 산하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되, 각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 선임 근거
<신 설>	**부 칙** 이 규약은 2021. 06.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요약) 대비표 ☞ 전문 별첨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회계감사)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서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회계감사 선출은 규약 제4절에 따른다.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이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5명을 둔다. ② ~ ⑦ <생 략>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약간명을 둔다. ② ~ ⑦ <좌 동>	⇒ 규약 제25조 선관위 구성 조항에 따름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 제공 2. 인신공격, 중상모략 3.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4.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 ②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금지사항)**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지원을 받거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입후보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5.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 선거행위 금지조항 정비 제안 ☞ 한국노총 임원선거 관리 규정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2조(벌칙) 제11조 각 항에 위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고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12조(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각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제11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 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1조 제5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 선거행위 금지조항 정비 제안 ☞ 한국노총 임원선거 관리 규정 참조
제6장 선거 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대의원 10인을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선거 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거구별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서 삭제>	⇒ 규약 제2절(대의원회) 개정안에 따른 수정 제안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 ② <생 략>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다수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 ⑤ <생 략>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 ② <좌 동>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1차 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④ ~ ⑤ <좌 동>	⇒ 노조법 및 규약의 “선출”에 따라 선거행위로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5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선출은 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선거구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구는 규약 제17조에 의거, 각 직능 및 직급별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되, 집행위원회에서는 획정 안을 대의원회로 제안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 공고 시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③ 선거구별 배정 인원 대비 후보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초과할 경우 1인 1표 기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규약 제2절(대의원회) 개정안에 따라 수정 제안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삭 제>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제17조(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3인)는 총회에서 호선을 받아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17조(회계감사 선출)** <삭 제>	⇒ 규약 제4절(회계감사위원회)에 따른 삭제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생 략>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좌 동>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투표장소 및 시간”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게 관리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0조(투표방법) ① 선거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②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기표소, 기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③<신 설>	**제20조(투표방법 및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송부 및 보관)** ① 투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기표소, 기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2.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 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호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함 등의 송부 및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은 사전에 보관 지점의 CCTV 정상 작동 및 녹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상 설치 장소를 개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투표함을 이송할 때는 후보자별로 참관인 1인 이상 동반하여야 한다.	⇒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과 관련한 사고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설 제안 (※참고: 공직선거법 준용)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1조(개표관리) ① 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 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한다. ③ 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 <신 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1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없다. ⑥ <신 설> ⑦ <신 설> ⑧ <신 설>	**제21조(개표관리)** ① 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 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한다. ③ <좌 동> ④ 개표순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거, 대의원 선거의 순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2명 이내로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며,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없다. ⑥ 참관인은 개표소 내의 개표상황을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에 대한 감시 이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표장에는 영상녹화장치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녹화한다. ⑧ 기타 개표과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 참관인과 개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 공정한 개표관리 및 사고(분쟁) 방지를 위한 개정 및 항 신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 후 즉시 개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조합에 보관한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즉시 개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등 각종 선거 관련 자료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제2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합에 2년간 보관한다.	⇒ 개표 결과 공정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제안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 취지</th></tr>
<tr><td><신 설></td><td>[별표-1]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구 획정표
<table><tr><th colspan="2">직능·직급</th><th>대의원 수</th><th>조합원 수</th></tr><tr><td rowspan="6">사무직</td><td>4급</td><td></td><td></td></tr><tr><td>5급</td><td></td><td></td></tr><tr><td>6급</td><td></td><td></td></tr><tr><td>7급</td><td></td><td></td></tr><tr><td>8급</td><td></td><td></td></tr><tr><td>9급</td><td></td><td></td></tr><tr><td colspan="2">관리운영직</td><td></td><td></td></tr><tr><td colspan="2">계</td><td></td><td></td></tr></table>※ 각 직능 및 직급별 선출 대의원 수는 규약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한다.</td><td></td></tr>
<tr><td><신 설></td><td>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td><td></td></tr>
</table>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준비 경과 보고

① 2020. 8. 28. _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33차 정기총회 2차년도 사업계획 의결 사항

■ 핵심사업 2호: 일반적 · 선진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집행위원회 수임)

> 2. 일반적 · 선진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 - 대면 접촉 및 집합적 사업 조건이 불가능한 시대적 환경 고려한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
> -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기구)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발족
> - 의사결정기구 정비,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정,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② 2020. 11. 18. _ 대의원회 심의: 제도개선연구위원회 구성

■ 대의원 3명, 집행위원회 2명, 노조위원장(총 6명)

③ 2020. 12. 21.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1차 회의

■ 연구자료 공유(노동조합 홈페이지 참고)

④ 2021. 4. 15.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1차 소위원회

⑤ 2021. 4. 16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2차 회의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잠정안 논의

⑥ 2021. 4. 27.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3차 회의 및 2차 소위원회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잠정안 도출

⑦ 2021. 5. 10.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4차 회의: 관련 제안서 채택

⑧ 2021. 5. 11.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대의원회 설명회 및 토론회

⑨ 2021. 5. 13.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보고서 조합원 공지(포털시스템 안내)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제안서 안내

⑩ 2021. 5. 14. _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연구결과 보고서 조합원 재공지(안내)

■ 포털시스템 전자메일 안내

⑪ 2021. 5. 17. _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제안 설명회 실시

■ 2회 실시: 노동조합 회의실(연구위원)

⑫ 2021. 5. 21. _ 대의원회 심의(완료):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제75차 노동조합 임시총회 상정 확정

1호 안건 처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1. 관련 근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8조(특별결의)** 1.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④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주문 사항

○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총회 의결사항) 및 제28조(특별결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의하오니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심의 후, 제75차 임시총회 당일 총회 장소(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실시

역대 노동조합 위원장

초대·제5대 이승팔 위원장

제2대·제4대 이양우 위원장

제3대 이영식 위원장

제6대 이상목 위원장

제7대·제8대 이선우 위원장

제9대·제10대 김현수 위원장

제11대 이기동 위원장

제12·제13대 양춘호 위원장

제14대 최문덕 위원장

제14대(보궐)·제15대·제16대 이준희 위원장

제17대 이철환 위원장(現)

제17대 노동조합 임원 및 집행부

제17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 원 장	**이 철 환**	여 성 부 장	**김 민 정**
부 위 원 장	**이 승 희**	복 지 부 장	**박 정 용**
사 무 국 장	**정 광 국**	법 규 부 장	**김 명 원**
기 획 부 장	**이 종 준**	쟁의/교육부장	**윤 종 찬**
조사통계부장	**김 용 식**	홍 보 부 장	**최 준 혁**
총 무 부 장	**이 은 경**	총 무 차 장	**석 기 정**
		기 획 차 장	**정 준 구**

제17대 노동조합 대의원회

의 장	**강 선 구**	대 의 원	**이 영 민**
총 무	**김 세 영**	대 의 원	**이 용 욱**
대 의 원	**김 형 진**	대 의 원	**최 원 태**
대 의 원	**이 재 욱**	대 의 원	**황 성 규**
대 의 원	**김 원 환**	대 의 원	**정 광 국**
대 의 원	**손 동 우**		

제17대 노동조합 회계감사

회 계 감 사	**김 규 연**	회 계 감 사	**윤 석 진**
회 계 감 사	**이 재 주**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75차 임시총회 자료집

| 노조창립일 | 1988. 2. 13.
| 발행일 | 2021. 5. 24.
| 발행처 |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 전　화 | 053-850-5760
| 팩　스 | 053-850-5764
| 홈페이지 | https://union.daegu.ac.kr